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4/2 통권 172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납부인 경우의 부가세 매출매입명세
-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3): 실행(Implementation)
-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 양도 후 국내법인에게서 받는 일시금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임 (p.13)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사업자단위·총괄납부와 사업장별 부가세 신고납부방법간비교>

개념, 구분	각 사업장 단위 과세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개념	각 사업장마다 개별신고납부	복수사업장 납부액을 주된사업장의 합산납부로 신청	사업장 여러개인 경우, 본사 사업자(단위)로 통합신고납부함(본점 등)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부가세 신고	각 개별 신고	각 개별 신고	다수사업장을 통합신고
부가세 납부	개별납부(+), 개별환급(-)	다수사업장 합산(+, -) 납부	다수사업장 합산납부
행위주체	각 사업장(지점) 단위	본점,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
세금계산서 등	각 사업장 발행, 수취	각 사업장 발행, 수취	본사 등이 사업자번호로 발행·수취 총괄
내부거래	사업장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간 매출·매입의 세금계산서 발행 안함
유리·불리 적용	• 사업장별 독립채산 시 • 복수경영주체 유리	특정사업장은 매입 위주로 환급(-)인 경우 자금상쇄 편리	사업장별 성과 관리 불필요 시(중앙단일경영주체 유리 회계, 기장, 세무 통합)
통합 AI 적용	과거 아날로그 방법 (독립계산 후 회계통합)	통장과 자금통합관리	온라인 AI 통합물류시대에 적합 (중앙통합 컴퓨터 총괄수행)
사업장별 손익	독립채산으로 매출·매입·인센티브 명확 구분, 자동계산	독립채산으로 매출·매입·인센티브 명확 구분, 자동계산	사업장별 손익구분 안됨 (성과는 별도 계산하여 측정함)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21호 / 주간 14호

2025. 4. 2.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사업자 단위·총괄납부와 사업장별 부가세 신고납부방법간 비교	표지
긴급시사해설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납부인 경우의 부가세 매출·매입명세	2
CEO의 경영산책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3): 실행(Implementation)	3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사은품만을 별도로 판매한 경우 회계처리	6
	- 해외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으로의 처리 문의	7
	- 기부 관련 문의	7
눈에맞는 절세미인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8
매일절세재무요점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세율	10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주요내용	11
직장인Survival	나태함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3049, 2024.08.12)	13
	-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615, 2024.09.10)	14
세정뉴스와해설	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 양도 후 국내법인에게서 받는 일 시금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임	13
세무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16
	-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8

#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납부인 경우의 부가세 매출·매입명세(서식)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양수 컨설팅  
(829-7575)

## 본사 등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신고기간 : 2024년 제 2 기 ( 7 월 1 일 ~ 12 월 31 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0  
(신청한 사업자나 본사 등의 단일번호)

사업장 (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가산세	공제 세액	납부 세액 (환급 세액)	비 고		
사업장 일련번호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과세 표준	세액	구분	과세 표준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기타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의제 등								
				기타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기타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의제 등								
				기타분											
합 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기타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의제 등								
				기타분											

#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3): 실행(Implementation)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새로운 전략적 경영목표( 예: AI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 추진)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이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관리를 통한 운영 단계에서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전사적 관점에서 재무관리 및 리스크 관리 등의 통합 지원 프로세스가 정립 운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관련 법규 을 준수하고, 조직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 ◎ 운영계획

기업의 전략적 목표는 조직화 및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이고 의미 있으며 관련성이 있으며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운영 목표를 개발한다. 다양한 행동과 활동에 대한 책임, 역할 및 기한을 설정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목표 달성 정도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련의 측정지표, 또는 기준을 설정하고, 불리한 상황 전개시 시정 조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 ◎ 핵심 프로세스의 관리

일반적으로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는 주어진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 다양한 부서와 시스템을 포괄하는 프로세스는 정의, 관리 및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고, 조정된 프로세스와 활동을 보장하고 지식 전달과 품질 향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주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를 거버넌스 문서에 명시한다. 조직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루틴을 공식화한다. 지원 프로세스와의 통합하여 핵심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실행과 관리, 통제에 기여하도록 한다. 핵심 프로세스에서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 ◎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 보호 및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확실성은 계획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긍정적인 결과도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는 거버넌스의 통합된 부분이어야 한다. Best Practice 사례는 리스크 관리가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되고 다른 관리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전체적인 관점("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리스크 관리는 조직의 체계적인 건전한 문화와 태도 개발을 통해 강화되며, 이는 전략적 및 운영적 차원에서 프로세스에 통합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 결정을 위한 최선의 기반에 기여해야 하며, 내린 결정이 기업의 다양한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스크 프로파일의 변화에 대응하여 완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건전한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리스크 관리 정책과 지침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방법론 및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리스크관리기능과 조직 운영을 고려한다.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략, 운영, 프로젝트 등 모든 관련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 조직의 리스크 선호도와 리스크 허용수준을 기술하고 정량화한다.
- 리스크 관리의 노출 수준을 결정, 관리 및 수용하는 리스크 오너십을 수립 운영한다.
- 기업의 주요 변화, 이벤트 및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리스크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식별하고 평가한다.
- 리스크에 대한 주요 통제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위험 프로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구현 및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을 문서화한다.

## ● 준법활동

이사회는 조직이 외부 및 내부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기여하는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CEO는 법규 준수의 격차(compliance gaps)를 식별하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책임 영역을 모니터링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할 운영 책임이 있다. 규정 준수 불이행의 위험은 운영 위험이며, 이러한 유형의 위험에 대한 작업은 조직 운영 위험의 일부로 조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규에 요구되는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한 준법기능( Compliance Function) 수립 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주요 법규의 이해, 조직의 활동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절차, 규정 미준수 위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규정 준수를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규정 준수 위반에 대한 통지와 사후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조직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내부의 자원과 필요시 외부전문조직 등의 지원을 받아 건전한 준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은품만을 별도로 판매한 경우 회계처리

**Q** 물품을 판매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고객에게 증정하였는데, 고객이 물품은 반품하고 사은품은 별도로 구매를 위하여 당사로 현금 이체 후 별도 구매하였습니다.

1. 당사에서 사은품 구매 시 비용 처리하였는데 입금금액에 대해 해당 건 원가 상계 처리 후, 차액은 잡이익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2. 사은품을 별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1. 판매취소가 되었으나 판매시점에 제공된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도 별도로 판매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으로의 처리 문의

**Q** 국내법인(중소기업)이 해외거래처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2021년 9월 27일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24년 현재 위 매출채권에 대한 2024년 법인 결산 시, 대손상각을 검토코자 합니다.

"법인세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손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A** 물품의 수출채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기부 관련 문의

**Q** 회사에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따로 모금한 금액을 외부 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 장부에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A** 회사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기부하는 경우 회사거래가 아니므로 회사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상담실 백종훈 차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부담할 세액을 신고한 후에 그 신고내용에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 이를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부담세액이 증가하는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라 하고, 과세표준이나 부담할 세액이 감소되는 정정신고를 경정청구라 한다.

따라서 이번 202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서 제출 후 과세표준의 변동사항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기법 별지 제16호 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 신고한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 46012 - 3278, 99. 8. 20).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는데, 우선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면 산출세액의 10%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면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에 가산하며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① 미납기간에 따라 하루 0.022%로 계산한 금액에 ② 미납 세액의 3%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늦게 납부할수록 가산세가 늘어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50%, 6개월 초과후부터 1년내는 30%,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내에 수정신고시는 10%의 신고불성실(과소신고 및 초과환급)가산세가 감면된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는 경정청구대상이 된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과다(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경정청구의 절차는 경정청구 기한내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법인)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라면 그 신고행위에 확정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국세불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절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 국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액경정하여 추징하겠지만 과다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액경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법인 요건(모두 충족)	과세표준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① 지배주주 등 지부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혹은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억원 이하	9%	1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1%
	3000억원 초과	24%	24%

\*지방소득세 별도

### 화

#### 일반·비과세 배당 비교

일반배당	구분	비과세 배당
순이익*	배당재원	자본준비금**
없음	법적 근거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 총액이 자본금 1.5배 초과시 가능
15.4% 부과	배당소득세	개인주주: 비과세 법인주주: 법인세 과세 이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6~49.0% 부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없음

\*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

\*\* 기존 주주들에게서 받은 자본 거래로 확보한 잉여금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주요내용

	현행	정부추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기준 변화	전체 유산	상속인별 취득 유산
인적공제 강화	일괄공제 / 기초 + 자녀공제 합계 증 큰 금액 제공	일괄공제 폐지
자녀공제 확대	인당 5000만원	인당 5억원
배우자공제 확대	최소 5억원 공제, 법정상속분 이내 최 대 30억원	최소 10억원 공제, 법정상속분 이내 실제 상속분 공제 (최대 30억원)
사실상 면세지점	10억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20억원 (배우자 10억 + 자녀 2인 10억)

※2028년 시행 목표



## 정부 재정운용 혁신 방안

### 재정지출 효과 제고

- 수요자 맞춤형 지원
- 부처 융합·협업 강화

### 지출 구조조정

- 의무지출 소요 재점검
-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 보조·출자·출연 정비

### 투자재원·방식 다각화

- 민간자원·금융 활용
- 조세지출 관리 강화



## 나태함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

### 1.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큰 목표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 미루게 만듭니다. '10분 책 읽기', '책상 정리하기'처럼 아주 작고 쉽게 끝낼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생기고, 더 큰 일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공부하거나 일하는 루틴을 만들면 나태함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습관이 되면 행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 환경을 정돈하기

산만한 환경은 나태함을 부추깁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불필요한 물건을 시야에서 치우는 것만으로도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 4. 자기 보상 시스템 활용하기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간단한 산책 등 자신을 격려하는 방식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을 마친 뒤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면, 시작이 한결 쉬워집니다.

### 5. 스스로의 생각 점검하기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피곤하니까"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합리적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은 단순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바로잡고 행동으로 옮기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나태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으로 삶의 흐름을 스스로 주도해 보세요.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 양도 후  
국내법인에게서 받는 일시금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  
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  
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  
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3049, 2024.08.12

### 질 의

-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당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내국법인(이하 "양수인")에  
계 양도하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어떠  
한 제한이나 조건 및 의무 없이 양수인에게 양도하  
는 조건으로 일시지불금(Lump Sum)과 추가지불  
금(Additional Payment)을 받기로 계약
  - 일시지불금 확정액과 추가지불금 한도액은 거래중  
개인의 중재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  
였음

### 질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을 양도하고 수취하는 대가 중 일시불(Lump Sum)로  
지급받는 금액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에 해당하는지

###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  
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  
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  
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  
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  
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6, 2024.08.19

### 질 의

- 전환사채 발행법인
  - 발행법인은 20xx.xx.xx. 설립된 비상장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
- 전환사채 취득
  - 20xx.xx.xx. 피상속인은 발행법인과 전환사채  
00억원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납  
입 후 취득함
- 전환사채 상속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전환청구기간에  
해당하나 조기상환 및 주식전환을 청구하지 않  
고 전환사채로 상속

### 질의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  
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  
2호 가목에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주식전환에 따른 주식평가 변동분을  
반영한 주식가액인지 여부

### ❶ 회 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615, 2024.09.10

### ❷ 질 의

- 질의인은 "동북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AA구) 24수용000"(이하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 소유한 토지 BB시 AA구 OO동 000-01 대지 00 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00천원, 동일 소재지 000-02, 000-03 지번의 대지를 '24.8.9 ~ '26.7.14 기간동안 일시 사용함에 따른 보상금 0천원(이하 "본건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본건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함

질의

-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토지 사용료의 소득구분

### ❸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

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임대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933, 2024.09.02

### ❶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 ❷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이미 고지받은 국세, 새로 신고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최장 2년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재해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2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체납 사업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외에도 재난으로 다친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대상자 가운데 법인세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조사 경우 원칙적으로 착수하지 않되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

### '납세자 부담↓ 신고 정확성↑'... 과세가격 신고 간소화 정책 추진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세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해 성실 납세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받고, 반복 제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되, 신고

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성실 납세자 및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면제 ▲동일 조건 거래 시 연 1회 자료 제출로 간소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과세자료 항목을 구체화해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모든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신고해온 기업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대해 매 신고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제도 역시 손질된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업의 실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계약서 등 추상적인 과세자료 요구 관행도 바뀐다.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예시를 포함해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고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기업과 관세사 등 신고인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관세법인 PASSWIN의 김현철 대표는 "납세자와 신고 대리인의 관계에서 과세가격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윤영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속통관과 정확한 가격신고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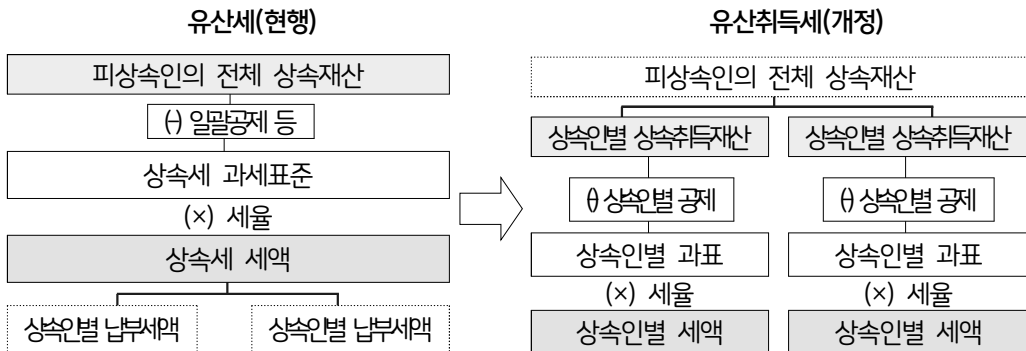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 2025. 3

## I. 추진배경

1

### 상속세 과세방식

-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 (각국 동향)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 유산취득세 채택
  - \* (유산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 (유산취득세)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
  - OECD,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

\*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1.5.」  
 “Inheritance tax may be more equitable than estate tax …(중략) may encourage the division of estates and further reduce concentrations of wealth”

\* IMF, 「How to tax wealth, '24.5.」  
 “In terms of equity outcomes, an inheritance tax is preferable to an estate tax, because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wealth inequality after the transfer”

**2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①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

-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에 부합
- 현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 적용(과도한 누진과세)
  - \* 예)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 vs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10억원)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 부담
- ⇒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 형평 개선

**②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 개선**

-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
-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
  -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수혜 가능(공제효과 이전)
  - \* 예) 장애인 공제 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받아 장애인 지원 실효성 저하
- ⇒ 상속인별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제 실효성 개선

**③ 상속과 증여간 과세기준 일치로 과세범위 합리화**

- 자산 무상이전인 ‘증여’와 ‘상속(마지막 증여)’은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
-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받은 재산(10년간 받은 재산 합산)에 과세,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
  -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
  - \* 창업자인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시 합산과세

⇒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 합리화

**【참고1】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 결과**

\* (2.26~3.5) 일반국민(10,000명) 및 전문가(34명) 대상 온라인·대면 설문조사 실시

- 일반국민·조세전문가 중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
  - (상속세 개편) 일반국민은 82.3%, 전문가는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
  - (유산취득세 전환) 일반국민은 71.5%, 전문가는 79.4%의 응답자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

**【참고2】 '00~'23년간 상속세 세수 및 과세자 수 추이**

-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5.1배('00)0.48%→('23)2.48%) 증가
  - 과세자 인원은 14.4배('00)0.14만명→('23)1.99만명), 과세자 비율은 10.4배('00)0.66%→('23)6.82%) 증가

<상속세 세수(단위: 조원)>

구 분	'00	'10	'15	'20	'21	'22	'23
국 세(A)	929	177.7	217.9	285.5	344.1	395.9	344.1
상속세(B)	0.4	1.2	1.9	3.9	6.9	7.6	8.5
비중(B/A)	0.0%	0.7%	0.9%	1.4%	2.0%	1.9%	2.5%

<과세자 비율(단위: 만명)>

구 분	'00	'10	'15	'20	'21	'22	'23
결정인원(A)	21.2	32.5	32.4	35.2	34.4	34.8	29.3
과세인원(B)	0.14	0.45	0.66	1.02	1.27	1.58	1.99
비율(B/A)	0.7%	1.4%	2.0%	2.9%	3.7%	4.5%	6.8%

## II.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기본원칙

◎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

- ①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 ▶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 →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
  - ▶ 과세대상(국내·해외 재산)을 유산취득세 전환에 맞게 조정
  - ▶ 세액공제, 부과방식 등 기본 체계는 현행 유지

- ②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 강화
  - ▶ 자녀 등: 현행 일괄공제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공제 현실화
  - ▶ 배우자: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 ▶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

- ③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 ▶ 현행 제도에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도록 설계

- ④ 납세 편의 고려
  - ▶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
  - ▶ 신고기한(6개월) 이후 별도 상속재산 분할기한(9개월) 설정

- ⑤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 ▶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 방안 마련
  - ▶ 과세관할(납세지)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현행 유지)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1) 과세방식

-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2) 납세의무

-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3) 과세대상**

- (현행)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개정)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現 증여세 체계와 동일
  -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예외 허용”)
    -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

< 현 행 >			⇒	< 개 정 >		
피상속인 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피상속인 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전세계 상속재산
비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비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 단기 거주 외국인 포함

**(4) 사전증여재산**

-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누진 과세 적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년(증여세 합산기간과 동일)까지, 수유자 등은 5년전\*까지 사전증여재산 합산
    - \*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산으로 인한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세부담 경감 취지
  - 생전 제3자 증여(예: 기부)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 부담
-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 →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현행	개정
상속인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수유자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그 외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불필요(증여세 부과로 종결)

※ (경과조치) 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수유자의 사전증여재산은 합산에서 제외

< 관련 해외제도 >

-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독일(10년), 프랑스(15년) / 상속인·수유자의 합산기간 동일

◆ 【사례】 A기업 창업주는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 기부, 자녀(1인)에 15억원 상속

	현행	개정
과세대상	40억원 (상속재산 15억원 + 사전증여재산 25억원)	15억원
공제	5억원(가정)	
과세표준	35억원(공제: 5억원 차감후)	10억원
세율	50% 세율 구간	30% 세율 구간

## 2 인적 공제제도

- ◇ 현행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재설계
  - (유산세) 모든 공제액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므로 특정 상속인 대상 공제의 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
  -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 각자의 공제액 차감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
- 자녀공제 등을 현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추가공제(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실효성 강화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반도록 제도 합리화
- 현행 인적공제 최소금액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1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 <현행>

<table border="1"> <tr><th>일괄공제</th></tr> <tr><td>5억원</td></tr> </table>	일괄공제	5억원	or	<table border="1"> <tr><th>기초공제</th></tr> <tr><td>2억원</td></tr> </table>	기초공제	2억원	+	<table border="1"> <tr><th>추가공제</th></tr> <tr><td>다음의 합계액</td></tr> <tr><td>○(자녀) 1인당 5천만원</td></tr> <tr><td>○(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td></tr> <tr><td>○(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td></tr> <tr><td>○(연로자) 1인당 5천만원</td></tr> <tr><td>* 자녀공제-연로자공제 동시적용 불가</td></tr> </table>	추가공제	다음의 합계액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연로자공제 동시적용 불가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추가공제															
다음의 합계액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연로자공제 동시적용 불가															

### <개정>

	<table border="1"> <tr><th>기본공제</th></tr> <tr><td>○ (직계존비속*) 5억원</td></tr> <tr><td>* 10억원(인적공제 최제한)까지 추가 가능</td></tr> <tr><td>○ (그 외) 2억원</td></tr> </table>	기본공제	○ (직계존비속*) 5억원	* 10억원(인적공제 최제한)까지 추가 가능	○ (그 외) 2억원	+	<table border="1"> <tr><th>추가공제</th></tr> <tr><td>다음의 합계액</td></tr> <tr><td>○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td></tr> <tr><td>○ (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td></tr> <tr><td>○ (연로자) 1인당 5천만원</td></tr> <tr><td>*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td></tr> </table>	추가공제	다음의 합계액	○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 (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
기본공제													
○ (직계존비속*) 5억원													
* 10억원(인적공제 최제한)까지 추가 가능													
○ (그 외) 2억원													
추가공제													
다음의 합계액													
○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 (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													
상속인	<table border="1"> <tr><th>기본공제</th></tr> <tr><td>○ (직계존비속) 5천만원</td></tr> <tr><td>○ (기타 친족*) 1천만원</td></tr> <tr><td>*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td></tr> </table>	기본공제	○ (직계존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기본공제													
○ (직계존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수유자													

- (현행)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총 5억원) 적용
  -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나,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 적용
    -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 동일\*
    -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0.5억원 x 6인'
  - 또한,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
    - \* 적용 비율: (미성년자 공제) 0.3%, (장애인 공제) 3.0%, (연로자 공제) 0.4%

- (개정)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 규정

-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생계보장 필요 정도) 등 고려
- (상속인) 직계존비속(예: 자녀) 5억원, 기타 상속인(예: 형제) 2억원
  - \* 자녀인 상속인은 각자 현행 일괄공제(5억원) 만큼 받도록 상향
  - 기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수준
-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 現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직계존비속 5천만원/4촌이내 혈족 등 1천만원)
  - ※ 현행에서는 수유자에 대해 사실상 인적공제 배제
-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 【사례】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현 행	개 정
자녀A	14세	일괄공제 5억원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0.5억원* * 미성년자 공제 5년 x 0.1억원
자녀B	9세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1억원* * 미성년자 공제 10년 x 0.1억원
합계		5억원	11.5억원

② 배우자공제 합리화

현 행	개 정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최저) 5억원(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현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전액 공제
- (개정)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 경감

◆ 【사례】 배우자+자녀 3인 가구, 상속재산: 18억원\*

\* 법정상속분= 배우자 6억원 + 자녀 3인 각각 4억원

「상황1」	실제 상속재산	공제액	
		현행	개정
배우자	9억원	배우자공제 6억원* * 5억원 초과시 법정상속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9억원
자녀A	3억원		기본공제 3억원
자녀B	3억원		기본공제 3억원
자녀C	3억원		기본공제 3억원
합계	18억원	11억원	18억원

③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 일종의 면세점 기능

\* 10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개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 【사례】 배우자+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

	실제 상속재산	공제액	
		현행	개정
배우자	3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억원
자녀A	7억원		기본공제 5억원 + 최저한 추가 공제 2억원*
합계	10억원	10억원	10억원

\* 인적공제 합계액 8억원(= 배우자공제 3억원 + 기본공제(자녀) 5억원) < 10억원

→ 미달액인 2억원(=10억원-8억원)을 자녀A에게 추가 공제

**4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현행)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
  -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 (수유자\*)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3**

**물적 공제제도**

- ◇ 기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기업, 영농, 금융 등)에 기반한 공제항목
  -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는 현행 공제혜택 유지

**1 기업상속공제**

- (현행)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공제한도는 기업상속공제 300~600억원\*
    - \* 경영기간: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 (개정)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 ※ 공동 승계시 기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 【사례】 자녀 2인, 상속재산 1,200억원(가업재산 600억원, 가업외재산 600억원)

※ 30년이상 경영한 기업: 총 한도 600억원

< 상황: 자녀A 가업재산 취득 가업승계, 자녀B 가업외재산 취득 >

(단위: 억원)	실제 상속재산			현행		개정	
	가업	가업외	계	공제한도	공제액	공제한도	공제액
자녀A	600	-	600	600	600	600	600
자녀B		600	600			-	-
합계	600	600	1,200	600	600	600	600

※ 영농상속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 2 기타 물적공제

- (현행)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운영 중
- (개정) 현행과 같이 적용 ※ 상속인 2인 이상 해당시 인별 안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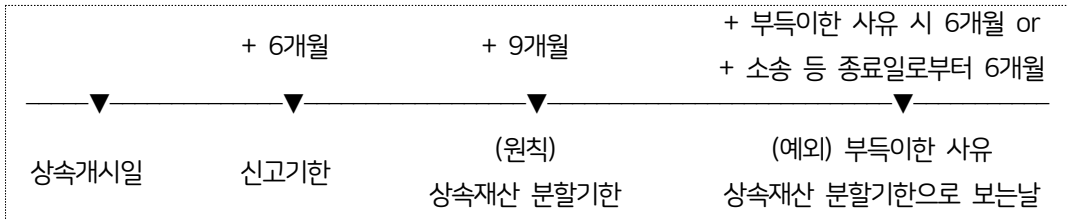
## 4 납세절차

◇ 현행 납세절차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속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기한 설정

- (신고의무)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
- (과세관할)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 현행과 동일
- (분할기한)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 허용
  - ※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 ※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상속재산 분할기한>**



- (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

**5 조세회피 대응**

- ◇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처분재산의 사용처 불분명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현행 제도 등 유지
    - ※ 위장분할, 우회상속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자들 간 연대납세 적용

**1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 (현행) 상속세의 경우 10년,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 15년
- (개정)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 \*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



- (대상)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기간) 상속개시후 5년내 증여
  - ※ 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기준(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후 5년내) 고려

### ③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 (현행)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 과세
- (개정)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

## Ⅲ.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향후 추진계획)
  - ('25년)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월) 공청회
    - (5월) 법률안 제출
  - ('26~'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세본 ●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1. 상속재산 등 용어의 정의(상증법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속재산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신 설>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상속인·수유자별 귀속재산을 지칭하는 용어 신설 ○ (상속취득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수유자 각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에 관한 정의 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기준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상속재산	<input type="checkbox"/>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로 간주 ○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 ○ 상속인·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

<개정이유>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 상속세 납부의무(상증법 § 3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인·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 납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 포함  <input type="checkbox"/> 연대납세의무 ○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납부의무 조정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한적 연대납세의무 ○ ①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②위장분할*한 경우 *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되는 자가 다른 분할 ※ 우회상속시 연대납세는 별도 규정(§27의2)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납부의무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4. 간주상속재산 과세방식 변경(상증법 § 8, § 9, § 1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상속재산에 합산 과세)	<input type="checkbox"/>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그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각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상속취득재산에 합산 과세)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간주상속재산 귀속 변경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5. 공익법인 및 공익신탁 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방법 조정(상증법 § 16, § 1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등 및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상속세 면제 ○ 출연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체 변경 ○ 출연재산가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피상속인 출연) 공익법인등 - (상속인 출연)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주식 초과출연 등의 경우 초과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li> <li>○ 초과보유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주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보유가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상속인 출연) 공익법인등</li> <li>- (상속인 출연) 상속인</li> </ul> </li> </ul> </li> </ul>
--	--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6.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 합리화(상증법 § 13)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산</li> <li>○ (합산대상)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li> <li>- (수유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li> <li>- (기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li> </ul> </li> <li>*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상속취득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합리화</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li> <li>- (기타) 합산 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해당 수유자의 상속취득 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7.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 범위 합리화(상증법 § 2, § 14)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사인증여의 범위</li> <li>○ 민법 §562에 따른 사인증여</li> <li>○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li> <li>○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의 범위 합리화</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진 증여채무</li> </ul> </li> </ul>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증여채무 합산기간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채무를 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그 증여채무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인증여에 포함하지 아니함

### 8.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방법 조정(상증법 § 14)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취득재산가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공과금 등 공제 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 공제제도 개편

### 1.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 개편(상증법 § 18, § 20, § 21)

현 행	개 정 안
□ (기초·일괄공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2억원</li> <li>○ (일괄공제) 5억원</li> <li>- (요건) 기초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li> </ul> * 단,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배제	□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의 개별 상속취득재산에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배우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비속) 5억원</li> <li>- (기타) 2억원</li> </ul> </li> <li>○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포기로 상속받는 후순위 상속인 포함</li> <li>- (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li> <li>*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등 포함</li> <li>- (기타 친족*) 1천만원</li> <li>*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li> </ul> </li> </ul>
□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1명당 5천만원</li> <li>○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li> <li>○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원</li> <li>○ (연로자) 1명당 5천만원</li> </ul>	□ 상속인·수유자별 추가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로 통합</li> </ul> ] ○ (좌 등)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인적공제제도 개편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합리화(상증법 § 1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제방법)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공제 ○ ‘실제 상속금액’에서 사전증여재산 제외(공제 대상에서 배제)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①·② 중 작은 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사전증여재산분 제외)  ② 30억원  <input type="checkbox"/> (최소공제액)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요건) 분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 ○ (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 ○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 포함(공제 대상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한도 조정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사전증여재산분 포함) - 다만, ①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한도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 ② (좌 동)  <input type="checkbox"/> 최소공제액 폐지  <input type="checkbox"/> 미분할시 공제범위 명확화 ○ 다만,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분 상당액(10억원 이내) 공제 ※ (현행) 분할기한 내 분할하지 않은 경우 5억원 공제(국세청 통칙)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배우자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상증법 § 20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 (적용요건) 모든 상속인 및 소유자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한 경우 ○ (적용대상)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인 상속인 ○ (최저한 추가공제액) 그 미달한 금액

<개정이유> 기존 공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4.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상증법 § 18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중견 기업의 상속 ○ (공제방법)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별 300~600억원	<input type="checkbox"/> 공제방법 등 변경 ○ (좌 동) ○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현행과 같음) - 공동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인별 가업상속 재산가액 비율(상속인간 합의비율 가능)로 한도 안분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5. 영농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상증법 § 18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농상속공제 ○ (대상)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농지·초지·산림지 등 ○ (공제방법)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30억원	<input type="checkbox"/> 공제방법 등 변경 ○ (좌 동) ○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영농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 ○ (현행과 같음) - 공동 영농상속의 경우 상속인별 영농상속 재산가액 비율(상속인간 합의비율 가능)로 한도 안분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6.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상증법 § 2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금융재산상속공제 ○ (공제방법) 순금융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과세가액에서 공제 * 금융재산 - 금융부채 ○ (공제금액) 다음 금액 - 순금융재산 ≤ 2천만원 : 순금융재산가액	<input type="checkbox"/> 공제방법 등 변경 ○ (공제방법) 순금융재산가액을 상속인별 과세가액에서 공제 ○ 현행 공제금액 및 한도를 상속인별 순금융재산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 후,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금융재산&gt;2천만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 순금융재산가액*20%와</li> <li style="padding-left: 40px;">2천만원 중 큰 금액</li> <li>○ (공제한도) 2억원</li> </ul>	별 순금융재산 비율*로 안분 * 분할기한내 상속재산 미분할시 법정상속비율
--	--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7.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방법 조정(상증법 § 23의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동거주택상속공제</li> <li style="padding-left: 20px;">○ (공제방법) 상속재산에서 공제</li> <li style="padding-left: 20px;">○ (공제금액) 주택가액</li> <li style="padding-left: 20px;">○ (공제한도) 6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공제방법 등 조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li> <li style="padding-left: 20px;">○ 현행 공제금액과 한도를 해당 상속인의 주택지분비율만큼 적용</li> </ul>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8. 재해손실공제 공제방법 조정(상증법 § 23)**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재해손실공제</li> <li style="padding-left: 20px;">○ (공제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공제방법 조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li> </ul>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재해손실공제 공제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9.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조정(상증법 § 19, § 20)**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제한적 납세의무*만 있는 경우 공제 적용 제한</li> <li style="padding-left: 20px;">*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한해 납세의무</li> <li>○ (적용) 기초공제(2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제한적 납세의무*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기본공제만 적용</li> <li style="padding-left: 20px;">*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 거주 외국인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취득 재산에 한해 납세의무</li> <li>○ 배우자공제 및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2억원</li> <li>- (배우자 외 상속인) 1억원</li> <li>- (수유자*) 1천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배제) 그 외 모든 공제</li> </ul>	<p style="text-align: right;">*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ul>
---	---

<개정이유>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 상속공제 적용 배제(상증법 § 24)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공제* 적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을 차감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모든 상속공제</li> <li>○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li> <li>○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li> <li>○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분 차감)</li> <li>*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공제 적용배제 방식으로 규정</li> </ul>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유자 및 상속 포기로 인해 상속받은 후순위 상속인은 인적공제만 적용</li> <li>○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적용</li> </ul> </div>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 세액공제

### 1. 증여세액공제 방식 조정(상증법 § 28)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li> </ul>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방식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조정(상증법 § 2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요건) - 피상속인이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과세방식을 상속인·수유자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 조정 ○ 세액공제 대상자 조정 - 상속인·수유자가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요건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방법 조정(상증법 § 3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 시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포함 ○ (공제방법) - 재상속시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방법·적용범위 변경 등 ○ (좌 동)  ○ 공제방법 보완 - 해당 재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단기 재상속 받은 경우는 각 상속인이 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재상속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4 납세절차

### 1.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상증법 § 6)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다음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li> <li>○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인 경우 :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등</li> <li>○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재산이 복수의 관할구역에 소재시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등</li> </ul> </li> </ul> </li> <li>*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 <span style="padding-left: 40px;">&lt;추 가&gt;</sp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과세관할 규정 보완</li>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li> <li>- 주된 재산 소재지 판단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화</li> </ul>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 효율을 고려한 과세관할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 상속세 신고방법 조정(상증법 § 67)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상속세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li> <li>○ (예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 둔 경우 9개월</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상속세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수유자 모두 신고의무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하면 나머지는 신고의무 면제*</li> <li>* 법령해석(서면-2015-상속증여-0779)</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li>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li> <li><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별 신고하되, 공동신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수유자 각자 신고하되, 상속인·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신고도 가능</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상속세 신고의무 승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수유자 사망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신고함을 명확화</li> </ul> </li> </ul>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세 신고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과세방법 규정(상증법 § 67, § 76, § 79)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재산 분할기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li> <li>○ (예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①분할기한 + 6개월 또는 ②소송·심판청구 종료일 + 6개월</li> </ul> </li> <li>* ① 상속인 미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li> <li style="padding-left: 20px;">②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수유자별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신고</li> <li>○ (분할기한 내 분할시)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기한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의무 부여 및 경정청구 허용</li> <li>○ (분할기한 내 미분할시) 상속인·수유자가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li> </ul> </li> <li>□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결정 허용</li> <li>○ (분할기한 내 분할시) 상속재산 분할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경정</li> </ul> </li> </ul>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분할기한 설정 등 신고·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 보완(상증법 § 4)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경우 당초보다 상속분이 증가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보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이 증여</li> <li>○ 상속재산의 등기등에 의하여 상속인별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세 과세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미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않아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li> </ul> </li> <li>*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li> </ul>

	(예외) 분할기한 또는 소송·심판청구 종료일부 6개월 ** 법정상속분(상속인) 또는 유증분(수유자)으로 확정
--	---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 보완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5.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추가(상증법 § 7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경정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 허용 ○ (청구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①신고한 자 또는 ②결정·경정 받은 자 ○ (청구사유) -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 변동 - 상속개시 후 1년내 수용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하락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특례 사유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 (좌 동)                     </div> -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미분할상속재산을 분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예외) 분할기한 또는 소송·심판청구 종료일부 6개월

<개정이유>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사유 추가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5 조세회피 대응

### 1.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조정(상증법 § 1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처분·채무부담 시 해당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 (과세방법)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input type="checkbox"/>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 ○ (과세방법) 다음에 따라 상속인·수유자별 과세가액에 산입 - 재산의 처분·인출, 금융회사 등 채무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법정상속분에 따라

	<p>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채무*로서 상속인에게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li> <li>: 해당채무를 상속취득재산 에서 차감한 상속인 등에 산입</li> <li>*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li> </ul>
--	---

<개정이유>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조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상증법 §3의2, §10의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시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부과</li> <li>○ (납세의무자) 영리법인의 주주·출자자</li> <li>○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법인이 수유자일 것</li> <li>- 해당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일 것</li> </ul> </li> <li>○ (과세방법)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직계비속의 지분상당액* 과세</li> </ul> <p>*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10%)]× 상속인·직계비속의 지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받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지배주주·친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li> <li>○ (납세의무자) 지배주주·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li> </ul> </li> <li>○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li> <li>*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li> <li>- 피상속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li> </ul> </li> <li>○ (과세방법) 특정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등 각자의 지분율 만큼(①×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아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특정법인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유증받은 재산가액 (법인세 상당액 제외)</li> </ul> </li> <li>- ② 지배주주등 각자의 지분율</li> </ul> </li> </ul> <p>※ (납세자별 과세한도) 지배주주등이 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액(법인세 상당액 제외)</p>

<개정이유> 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상증법 §27의2, §76)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속세 추가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0억원 이상</li> <li>- (대상) 상속개시후 5년내 증여</li> <li>- (세액비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유증·증여(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이 감소한 경우 (⇒ 감소액만큼 과세)</li> <li>○ (납세의무) 우회상속인의 추가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 특수관계인은 연대납세</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우회상속을 통한 조세회피 추가 과세제도 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 1.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국기령 §12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10년</li> <li>○ (예외)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li> <li>- 무신고</li> <li>- 상속세 거짓·누락신고</li> </ul> </li> <li>※ 거짓·누락신고 사유(시행령§12의2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채무를 빼고 신고</li> <li>▪ 상속인·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li> <li>▪ 금융자산 신고 누락</li> </ul> </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lt;추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예외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li>※ 거짓·누락신고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위장분할로 사실상 귀속자 및 명의자가 실제 분할과 다르게 신고</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미분할 상속재산 및 우회상속 관련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법 §47의2, §47의3, §47의4)

현 행	개 정 안
<p>□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lt;추 가&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면제 사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분할기한 내 기한 후 신고·납부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증가된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 후 신고시 당초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li> </ul> </li> <li>○ 우회상속의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납부 등으로 증가된 세액</li> <li>※ 우회상속인의 우회상속 외 상속세 무신고 등은 가산세 적용</li> </ul> </li> </ul>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21일(금)	3월 24일(월)	3월 25일(화)	3월 26일(수)	3월 27일(목)
미 달 러 (USD)	1459.20	1466.90	1466.90	1469.60	1465.30
일 본 엔 (JPY)	981.14	980.65	973.36	980.09	974.37
영 국 파 운 드 (GBP)	1891.93	1894.21	1895.31	1901.88	1886.21
캐 나 다 달 러 (CAD)	1018.60	1023.05	1024.59	1029.46	1024.15
홍 콩 달 러 (HKD)	187.74	188.71	188.69	189.01	188.45
위 안 화 (CNH)	201.70	202.41	202.04	202.24	201.49
유 로 화 (EUR)	1584.33	1587.33	1584.62	1585.33	1573.15
호 주 달 러 (AUD)	919.66	920.92	921.87	926.29	920.21
싱 가 폴 달 러 (SGD)	1093.12	1097.90	1095.85	1099.63	1092.33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29.69	331.80	330.83	331.29	330.80

#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 관세행정 종합지원

- 국세청 · 관세청, 2025. 3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하여 '25.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확대) '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 [기한 연장] ① 증명·등록·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압류·매각유예] ① 증명·등록·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턴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하고,
  - '25.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세무검증 유예) '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자연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 참고 2

###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참고 3

###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4** 특별재난 피해자 지원 법령 개정 사항

- '25.02.2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및 제77조의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외 소재 재난피해 사업자에게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77②)

개정전	개정후
<p><input type="checkbox"/>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li> <li>○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li> </ul> </li> </ul> <p>* 압류·매각 유예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지원 대상자 추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li> <li>③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li> </ul> <p>*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p>

**참고 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

**참고 6**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 ④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관세청

□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수) 밝혔다.

□ 이번 지원은 ①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②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③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④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③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④ (특별통관 지원) 대형산불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